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 북 구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2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명 명칭 추가 및 정비 (별표1 개정)

나. 사용신청 주민우선 조항 추가 : 제3조 5항

다. 명칭 변경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내용개정

- “성북구 생활체육회” ⇒ “성북구체육회” (2021.6.2.법인설립등기)

라. 국가유공자 감면 조항 추가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1항 5호 개정

- “국가유공자(배우자포함)” ⇒ “별표3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으로 개정

- 별표3을 추가 (별표3 제정)

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을 정비

마. 기한지난 조항 삭제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③항 폐지

- 2019년 12월 31일 까지 10%감면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바. 이용료 반환규정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도록 개정 : 제10조, 11조

사. 사용제한 사유 발생 시 시설이용을 제한하고 공개하는 조항 추가 : 제13조 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법령

법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보훈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이용료 면제 - 고궁 및 능원 - 국공립 공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 국공립 자연휴양림 ○ 이용료 50% 이상 감경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독립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고엽제법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18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	○ 의사자 본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배우자 및 자녀 ○ 활동보조인(의사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송환법	○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2조(장애인등록)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2. 10. 6. ~ 10. 26.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4)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5) 비용추계 등 자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첨부

6)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단체 구성원 중 성북구에 주민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신청자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성북구 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를 “성북구체육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급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국가 유공자(배우자 포함), 생활체육회”를 “[별표3]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성북구체육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생활체육회”를 각각 “성북구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준하여”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경우 위약금”을 “경우”로,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을 “신고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30일간 시설이용을 제한 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공개 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제2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기 능
성북구민체육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44 (월곡동)	축구, 헬스, 탁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포츠교실 등
개운산스포츠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수영, 헬스, 에어로빅, 스포츠교실 등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8길 307(석관동)	수영, 헬스, 에어로빅 스쿼시, 골프연습장, 스포츠교실 등
북악골프연습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537-14 (정릉동)	실외 골프연습장
해오름휘트니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돈암동)	헬스, 요가, 스포츠교실 등
구민회관헬스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77(돈암동)	헬스
정릉테니스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87-357 (정릉동)	테니스
월곡구립배드민턴전용 체육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130 (월곡동)	실내 배드민턴
석관풋살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27-7 (석관동)	풋살
석관족구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4-5번지 일부 (석관동)	족구
정릉족구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87-372 일대	족구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9길 49 (삼선동)	헬스, 스포츠교실 등
물빛수영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길음동)	수영, 스포츠교실 등
장위건강누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1나길 18 (장위동)	헬스, 스포츠교실 등
종암박스파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 (종암동)	스포츠교실, 농구 등

[별표3]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관련법 및 감면대상(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법률명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상자 및 그 가족, 의사자 유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용허가) ① ~ ④ (생략) <u><신 설></u></p>	<p>제3조(사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또는 단체 구성원 중 성북구에 주민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신청자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u></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서울특별시 성북구 <u>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u>에 등록된 종목별 7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100분의 70</p> <p>5. 장애인(3급 이상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 <u>국가 유공자(배우자 포함), 생활체육회에 등록</u></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체육회</u>----- ----- ----- ----- ----- ----- -----</p> <p>5. -----<u>장애인</u>----- ----- <u>[별표3]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성북구</u></p>

된 종목별 60대 대표단(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 : 100분의 50

6.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연합회 및 단위클럽(체육관, 축구장·족구장·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 : 100분의 30

7. ~ 11.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단체나 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

2.·3. (생략)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시 2019년 12월 31일

체육회-----

6. 성북구 체육회-----

7. ~ 11. (현행과 같음)

② -----

-----.

1. 성북구 체육회-----

2.·3. (현행과 같음)

<삭제>

까지 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때에도 중복하여 감면한다.

④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7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위약금 10%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신고한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2. (생략)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② (생략) <신설>

④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

1. -----

----- 경우 -----

----- 신고일까지의 이용
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잔액
-----.

2.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30일간 시설이용을 제한 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공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별표1] (개정 2015.2.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제2조 관련)

시설명	위 치	기 능
성북구민체육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암로13길 144 (별곡동)	축구, 펜스, 탁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포츠교실 등
개운산스포츠클럽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중업동)	수영, 펜스, 에어로빅, 스포츠교실 등
성북중앙레크리에이션	서울특별시 성북구 탄현로 58길 307(석관동)	수영, 펜스, 에어로빅, 스쿼시, 골프연습장, 스포츠교실 등
북악골프연습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837-14 (성동동)	실외 골프연습
해오름위트니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돈암동)	펜스, 요가, 스포츠교실 등
구민회관펜스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77(돈암동)	펜스
정동테니스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동동 387-357 (정동동)	실외 테니스
철적길내배드민턴경기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암로 13길 144(별곡동)	실내 배드민턴
석관꽃살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27-7 (석관동)	꽃살
석관리구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4-5번지 일부 (석관동)	축구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별표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제2조 관련)

시설명	위 치	기 능
성북구민체육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암로13길 144 (별곡동)	축구, 펜스, 탁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포츠교실 등
개운산스포츠클럽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중업동)	수영, 펜스, 에어로빅, 스포츠교실 등
성북중앙레크리에이션	서울특별시 성북구 탄현로 58길 307(석관동)	수영, 펜스, 에어로빅, 스쿼시, 골프연습장, 스포츠교실 등
북악골프연습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837-14 (성동동)	실외 골프연습장
해오름위트니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돈암동)	펜스, 요가, 스포츠교실 등
구민회관펜스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77(돈암동)	펜스
정동테니스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동동 387-357 (정동동)	실외 테니스
철적길내배드민턴체육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암로 13길 130 (별곡동)	실내 배드민턴
석관꽃살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27-7 (석관동)	꽃살
석관리구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4-5번지 일부 (석관동)	축구
정동체육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동동 387-372, 일부	축구
성북구영위트니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문로29길 49 (암사동)	펜스, 스포츠교실
훈민수영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탄현로7길 20 (인공동)	수영, 스포츠교실
암사정자동노년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암사로21나길 13 (암사동)	펜스, 스포츠교실
송암체육공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암로 8 (중업동)	격투기, 농구, 스포츠교실

[별지 제3호서식]

[별표3] (신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관련법 및 검면대상(제10조 ①항 5호 관련)

법률명	관련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명예심장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헌유공자 예우 및 단체심장의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증 등 분자지원 및 단체심장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차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공포로의 승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동북포로 및 임박지출신 포로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상자와 그 유족, 의사자 유족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근거법령에 따른 조문 개정과 신규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장 홍 지 현